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96
----------	-------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서미화 · 서영석 · 김영환
양문석 · 용혜인 · 한창민
김예지 · 김선민 · 최혁진
김태선 · 천준호 · 이학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의심사례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26.3%에 불과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2호 신설 등).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의4를 삭제한다.

2.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요원은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0조(과태료)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u>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은 제외한다.</u>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u>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u>	<u><삭 제></u>

<u>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 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 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 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 복무요원은 제외한다.</u> 3의5. ~ 7. (생 략) ④ (생 략)	3의5.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